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77

발의연월일: 2021. 9. 15.

발 의 자:권인숙·강득구·김정호

소병철 · 안호영 · 용혜인

유정주 • 윤미향 • 윤영덕

이규민 • 이수진(비)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는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범위가 법개정을 통해 확대되어 왔음.

그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이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된 기관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안제56조, 제57조).

한편, 범죄의 처벌형을 규정하는 조문의 체계적 완비성을 위하여 해당 징역형의 범위가 '무기'인지 '유기'인지에 관해 정확한 법적 표현을 사용하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처벌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본법의 입법 목적이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규정에 연령 개념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32조).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유기징역에"를 "징역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기징역에"를 "징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징역에"를 각각 "유기징역에"로 한다.

제16조 중 "유기징역에"를 "징역에"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를 "아동·청소년에"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제11조제3항·제5항,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을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5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9조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를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취업 중인 자에"를 "취업자등에"로, "취업 중인 자가"를 "취업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9의2. 제4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제47조의 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⑧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 같은 항제21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고용하여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제2호의2, 같은 항제21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취업자등에 대해서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자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제1항제2호 및 같은항 제2호의2, 같은항 제21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같은항 제2호의2, 같은항 제2호의2, 같은항제2호의2, 같은 항제21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같은항제2호의2, 같은항제21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1항제3호 중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 지원시설"을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14.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강제추행 등) ①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u>유기징역에</u> 처한다.	<u>징역에</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	제작·배포 등) ①
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u>유기징역에</u> 처한다.	<u>징역에</u>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	②
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	
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	
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u>징역에</u> 처한	<u>유기징역에</u>
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	③
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u>징역에</u> 처한다.	<u>유기징역에</u>

-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자는 3년 이상의 <u>징역에</u>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u>징역에</u>처한다.
- ⑥·⑦ (생 략)
-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 ② (생 략)
 -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 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 는 <u>사람에</u>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

	4
	<u>유기징역에</u>
	.
	⑤
	<u>유기징역에</u>
-31	⑥·⑦ (현행과 같음)
제	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
	위)
	 징역에
제	<u> </u>
'''	· ② (현행과 같음)
	(3)
	아동·청소년에

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 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④ (생략)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11조제3항 ·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5조제2항 · 제3항 또 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 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 2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 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1항부터 제6항까지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7 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 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

에의 취업제한 등) 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등) ①

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 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 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 1. ~ 5. (생략)
-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 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 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 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6의2. ~ 8. (생략)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 상담소

<신 설>

- 10. ~ 22. (생략)
- ② ~ ⑥ (생 략)
- ⑦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 ⑦ ------

1. ~ 5. (현행과 같음)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
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
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
른 청소년복지시설
6의2. ~ 8. (현행과 같음)
9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
시설과
9의2. 제47조에 따른 아동·청
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0. ~ 2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u>취업자등에</u>
<u>취업자등이</u>

⑧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1 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 같은 항 제21호의 아동·청소 년 관련기관등을 지원할 목적 으로 고용하여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 같은 항 제2 1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취업자등에 대해서는 제5항에 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 장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자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제1항제 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 같은 항 제21호의 아동·청소년 관 ⑧ (생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 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 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활 센터, 같은 항 <u>제6호의2의 학</u> 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56조

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
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 같은 항
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
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
를 한 것으로 본다.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
확인) ①
1.・2. (현행과 같음)
3
<u>제18호의 가정방</u>
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u><삭 제></u>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

- 5. (생략)
- ② (생략)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신 설>

- 3. 4. (생략)
- 5. 제56조제1항제9호의 청소년
 5. ------성매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
 <u>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u>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u>
1. (현행과 같음)
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
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u>2</u> 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 4. (현행과 같음)
5 <u>성매매</u>
1 1 1 1 4 4 4 1 1 1 1 1 1 1 1 1 1 1 1 1

소 <신 설>

6. ~ 12. (생 략)
13. 제56조제1항제18호의 가정
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신 설>

④ ~ ⑥ (생 략)

5의2.제56조제1항제9호의2의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6.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14.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④ ~ ⑥ (현행과 같음)